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심위의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정보
모니터링 근거 마련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87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심위의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정보 모니터링 근거 마련(안 제3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윤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1. 방심위의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정보 모니터링 근거 마련(안 제33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 제33조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
- 1)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33조제2항제16호의2 신설),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3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심의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짓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처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3조는 제1항²⁾에서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해당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3조제2항 각 호에는 ①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③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④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³⁾는 의료행위·약

2)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

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의료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 제33조제2항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심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약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심의 규정(제42조)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금지행위⁴⁾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14조(객관성)⁵⁾ 규정을 통해 의료정보의 거짓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효능의 과장,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 △부작용 정보 축소 등

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협회 및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심의규정(제14조 객관성, 제42조 의료행위)에 따라 방심위가 의료정보를 심의하고 이에 따라 방송사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입법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안은 방송사에 대한 과도한 상향입법 규제이며 심의규정 외의 부가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다른 매체(인터넷)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방송사는 심의규정을 근거로 프로그램 방영 전에 엄격한 자체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거짓 정보 여부 판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현행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등에 따라 방심위가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므로, 입법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제이티비씨 : 불수용) 본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입법 목적은 이미 현행법을 통해 충족되고 있는 바, 법으로 심의규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과잉 입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하고, 「방송법」 제33조, 동조제2항제13호 등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은 제14조(객관성)나 제42조(의료행위 등) 등의 조항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심의·제재 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을 적용하여 심의 및 제재를 결정한 바 있고, 방심위의 심의 사례를 참고하여 방송사가 자체심의에 적용하는 등 이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불수용 입장임.

- (주)조선방송 : 불수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에 따라 방심위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특정 분야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상향 입법 규제로, 불수용 입장임.
- (주)채널에이 : 신중검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이미 거짓 의료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송사들이 자체심의를 통해 방송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주)매일방송 : 신중검토)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내용은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도 충실히 심의를 할 수 있

다고 판단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특정 단체에 거짓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심의규정 이외의 부가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2중 규제라고 생각되며,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된 단체나 기관에 거짓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한다고는 하나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고, 거짓정보 판별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지체되는 점 등으로 원활한 제작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신중검토 입장임.

- (주)연합뉴스티브이 : 신중검토)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에 명시되어 있고, 법 개정 앞서 방송심의 관련 현행 법·제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합뉴스TV는 보도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심의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체 심의기구인 심의실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입장임.

- 다만 방송사업자 중에서도 EBS는 ‘건강’, ‘의학’, ‘약학’ 정보는 국민의 삶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관련 모니터링과 전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수용 입장임.

- 한편, 안 제33조제7항은 방심위가 거짓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처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관계부처에 대한 협조 요청은 「행정절차법」 제7조⁶⁾의 행정청 간의 협조 등으로 같은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 요청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심위와 같은 민간 조직이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부 등에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방송심의규정에 넣도록 명시하고 방심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 방송심의규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어 추가적인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 한국방송협회 및 (주)제이티비씨 등 방송사업자의 의견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

6)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